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2022-18호 | 2022년 7월 19일 | 발행처 민주연구원 | 발행인 노웅래 | idp.theminjoo.kr

경찰국 설치, 경찰개혁 아닌 경찰개악

- 검찰로 부족해 경찰도 길들여 권력기관 장악하겠다는 것인가?
-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해 정치적 중립과 국민인권 보장해야

박 혁 연구위원(정치학 박사)

《 요약 》

■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의지 노골화

- 정부는 경찰국을 다음 달 2일에 행안부 내에 설치키로 함
- 행안부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 인사권, 감찰권까지 갖게 됨
- 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일선 경찰들의 강력 반발에도 강행

■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국 설치의 3대 문제점

- 첫째, 반역사적 퇴행
 - 행안부에서 치안업무를 없애고 경찰청을 행안부(내무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킨 것은 4·19혁명과 87년 민주화 운동의 산물
 - 경찰국 설치의 경찰을 다시 독재의 하수인 노릇 하던 시대로 되돌리자는 것
- 둘째, 법치주의를 말살
 - 치안을 행안부의 소관 업무에서 폐지한 정부조직법과 독립된 외청인 경찰청이 치안업무를 하게 한 경찰법을 위반하는 중대 사안
- 셋째, 정권통제이지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는 점
 - 대통령-행안안전부장관-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상명하복 체계로 13만의 경찰조직을 정권이 장악해 경찰국가화의 위험 상존

■ 국가경찰위원회의 실효적 강화를 통해 민주적 통제 필요

-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만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존중하는 국민의 경찰 가능
- 첫째,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구로 변경
- 둘째, 위원장의 위상을 높이고 위원들의 선임방식도 더 민주적 방식으로 변경
- 셋째, 경찰고위직에 대한 인사권한을 강화
- 넷째, 위원회에 감사, 감찰, 징계 요구권 등 다양한 요구권도 부여

♣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경찰장악 의지 노골화

○ 정권의 경찰통제 강화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위협

-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21일 행정안전부에 경찰관리조직을 신설하라는 권고안 발표
 - 그 외에도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등 고위직 경찰인사와 관련한 제청자문위원회 설치
 - 부실과잉 수사에 대한 경찰자체 감찰 및 외부 감사 강화
 - 경찰청장 등 고위직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징계요구권 부여
 -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 명문화를 위한 지휘규칙 신설 등 권고
- 행안부 장관은 권고안에 따라 8월 2일부터 행안부 내에 경찰국 신설 강행하겠다고 발표
 - 시도경찰청장급인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함
 -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 위원회 안건 부의 등 치안정책과 경찰인사 담당
 -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하는 규칙도 제정

○ 국민 다수의 반대와 경찰의 반발에도 강행

- 다수 국민과 경찰들은 경찰국 설치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
- 많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들의 우려 드러남
 - 조원씨앤아이(7. 5.) 조사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51.0%, 찬성 40.3%. KSOI(6. 20.) 조사에서 반대 46.4%, 찬성 39.7%
- 경찰의 반발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
 -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하자 김창룡 경찰청장 곧바로 사직
 - 일선 경찰들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릴레이 삭발과 단식을 이어가며 집단반발

2. 경찰국 설치의 3대 문제점

1) 반역사적 퇴행

- 경찰국 신설은 경찰청 독립의 역사성 무시한 채, 다시 정권 하수인 경찰로 되돌리겠다는 것
 - 행안부에서 치안업무를 없애고 경찰청을 행안부(내무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킨 것은 4·19혁명과 87년 민주화 운동의 산물
 -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은 내무부에 치안국과 치안본부를 두어 정권유지 위해 경찰 사병화
 - 독재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정권의 하수인 노릇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
 - 4·19 혁명 직후 있는 제3차 개헌(1960)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키 위해 필요한 기구를 「정부조직법」에 규정할 것을 헌법조항에 명시
 - 헌법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내무부의 치안·경찰업무는 폐지하고 독립적인 공안 위원회 설치해 이관

■ 제3차 개헌 헌법 제75조

- ①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 ②전항의 법률에는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기구에 관하여 규정을 두어야 한다.

■ 정부조직법(1961)

- 제13조 (경찰기구) ①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公安위원회를 둔다.
- ②公安위원회의 조직과 경찰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 제16조 (내무부) ①내무부장관은 지방행정·선거·도로·교량·하천·수도와 건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독한다.
-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지방국과 토목국을 둔다.

- 박정희 정권은 5차 개헌(1962)을 통해 헌법에서 경찰 중립 조항 삭제하고, 정부조직법 개정해 치안을 다시 내무부 업무로 이관해 치안국 설치

■ 제5차 개헌 헌법

제91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정부조직법(1963)

- 제20조 (내무부) ①내무부장관은 지방행정, 선거와 치안, 소방 및 해양경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독한다.
-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지방국과 치안국을 둔다.

- 1974년 내무부 산하의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해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경찰을 독재정권 유지 위한 통치수단으로 사용
- 87년 민주화 운동 성과로 다시 내무부 치안본부 폐지, 경찰청 설치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 87년 민주화 운동의 기폭제였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 요구 높아짐
- 내무부의 업무에서 치안을 없애고 경찰청을 내무부 소속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한 경찰법 제정

■ 정부조직법(1990)

- 제31조 (내무부) ①내무부장관은 지방행정·선거·국민투표 및 민방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독한다.
- ②내무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 ③치안 및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
- ④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경찰법(1991)

- 제2조 (경찰의 조직) ①치안 및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
- 제5조 (경찰위원회의 설치) ①경찰행정에 관하여 제9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법치주의 말살

- 현행 정부조직법 상 행안부 업무가 아닌 치안업무 위해 행안부에 경찰국 설치하는 것은 위법
- 1991년 경찰법 제정 당시 정부조직법 상 치안을 행안부장관 소관사무에서 삭제한 이래 치안은 경찰청의 독립적 업무

-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치안을 행안부의 소관 업무에서 떼어 낸 정부조직법 위반

■ 현행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 ⑥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경찰법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두어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으며, 행안부장관은 경찰 위원회에 안건부의권, 재의요구권만 행사해 간접통제 방식만 부여함
- 현행법상 경찰위원회의 역할을 배제하고 시행령으로 지휘규칙과 경찰국을 만드는 것은 경찰법 위반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 ①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4. 국가경찰사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제 4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7.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 경찰국 설치의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안

- 법률이 정한 본질적 사항을 시행령으로 바꾸는 것은 법치주의 위배이자 강력한 탄핵 사유

- 경찰과 행안부의 관계가 문제라면 국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률 개정으로 해결해야 함

- 법무부 안에 검찰국이 있는 것은 1948년 정부조직법 제정 당시부터 검찰사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규정에 따른 것

※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경찰과 행안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면 입법논의를 해야 하며, 현행법에 어긋난 시행령 통치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위헌

3) 민주적 통제 아닌 정권의 통제

-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의 정권이 자신의 입맛대로 경찰을 부리고 통제하려는 것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에 심대한 위협

- 정권의 통제는 이전 보다 훨씬 커진 경찰 권한을 이용할 수 있어 더욱 위험
 - 경찰국 설치와 함께 행안부 장관이 고위직 인사권, 감찰권 모두 갖는 것은 노골적인 경찰통제 의지
 - 법률상 행안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사권과 감찰권은 수사지휘와 같은 효력 발생
- 경찰을 견제해 권한 남용 가능성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정권의 통제가 아닌 민주적 통제의 강화
-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행안부 장관을 통한 정권의 직접적 통제 대신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 강화하는 것
 - 문재인 정부는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약속했으나 추진하지 않음

3. 정권통제가 아닌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 :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강화

○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

- 최근까지 경찰은 정권 입맛에 맞는 법집행으로 국민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한 사례 적지 않음
 - 2008년 광우병 집회를 막는 명박산성, 2009년 과잉진압에 따른 용산참사, 이명박-박근혜 시기 선거개입 등
- 대통령-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상명하복 체계로 13만의 경찰조직을 정권이 장악해 경찰국가화의 위험 상존
 - 검찰의 수사지휘권폐지, 수사종결권 부여,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경찰권이 비대해짐에 따라 경찰권 남용 우려 더욱 증가
 - 현재도 전체 형사사건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질 전망
- ※ 2018년도 형사사건의 총 검거건수 1,466,406건 중에서 검찰이 처리한 사건은 28,353건으로 2%에 불과. 경찰은 1,290,340건으로 88%, 해양경찰은 38,168건으로 2.6%, 특별사법경찰은 109,545건으로 7.4%(대검찰청, 2019 범죄분석)
-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만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경찰권 남용을 막아 국민 기본권과 인권 보장 가능
 - 경찰에 대한 통제는 정권차원의 일방적 통제가 아닌 입법, 사법, 언론, 시민, 사회단체 등 복수가 주체가 되는 민주적 방식이어야 정치적 중립성 확보 가능
 - 경찰이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공정한 원칙과 일관된 기준으로 법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한 중립적 기관이 통제의 주체가 되어야 함
 - 현행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해 경찰권을 민주적이고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안

○ 현 국가경찰위원회의 문제점

-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수사권 남용 통제를 위한 가장 유력한 기구이지만 단순한 자문기구여서 실제적 통제기능 미비
 - 현재 ‘국가경찰위원회’는 1991년에 설치된 경찰위원회를 이름만 국가경찰위원회로 변경했을 뿐 권한과 위상에 큰 변화 없음
 - 주요 업무는 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국가경찰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인권보호에 관련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
 - 국가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경찰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권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 없음
 - 또한 경찰행정업무 관련해 경찰청장이 부의한 사항과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이 없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 ①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 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4. 국가경찰사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 제4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7.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①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 현실적으로 위원회가 경찰의 정책안을 부결하거나 경찰청과 다른 정책적 견해를 제시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 심의의결권조차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권한은 경찰정책의 ‘거수기’ 역할에 그침
 - ※ 경찰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한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총 380회 회의를 개최해 2,669건의 안건 심의. 총 1,749건의 의결건수 중 1,393건이 원안 그대로 가결되었고(79.6%), 수정의결 또는 일부의결은 252건(14.4%), 재상정·보류는 101건(5.8%), 부결은 3건(0.17%)에 불과. 2008년 이후로는 단 한건도 ‘부결’ 결정을 내리지 않음

- 경찰 감독기구로서의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미흡
 - 경찰구성원의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감사 및 감찰 권한 없음
 - 국민들로부터 경찰에 관한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는 조직과 권한이 없음

○ 국가 경찰위원회의 경찰권 관리·감독 권한 강화

-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합의제 행정기구로 변경
 - 현재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경찰정책의 심의·의결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자문기구에 불과함(국가경찰법 제7조)
 - 행자부 장관 및 경찰청은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 회의에 부칠 수 있지만 위원장이나 위원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회의에 부칠 수 없음(국가경찰법 제10조)
 - 국가경찰위원회는 조직의 위상과 업무성격상 합의제 행정기구(행정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
 - ※ 합의제 행정기구(행정위원회)는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고 그 의사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외부로 표시할 권한을 가지며 통상 산하에 보좌기구를 설치하고 행정집행권을 가짐

■ 합의제행정기관 설치의 근거와 요건

<정부조직법>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상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함
 -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견제기구로 신설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독립성을 명문화함
 -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직접감사 및 감찰요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하고 위원 증원과 선임방식 개선
 - 위원장의 위상을 장관급으로 하고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 ※ 경찰개혁위원회가 2017년 권고한 경찰위원회 개혁안에서도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함
 - 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증원
 - 행안부 장관이 독점하고 있는 위원 제청권을 국회와 대법원 등으로 분산해 민주적 통제 강화
 - ※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행안부 장관이 사실상 위원의 선임을 일방적으로 주도
 - ※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개혁안에서는 위원을 9명으로 늘리고 국회 3인, 대법원 3인, 대통령 3인 각각 선출 혹은 지명토록 함
- 인사 관련 권한 강화
 -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
 - ※ 현재는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권만 갖고 있음(국가경찰법 제14조 2항)
 - 총경급 이상 승진, 경무관급 이상 전보 등 인사 제청권
 - ※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명제청권 등 경찰인사권을 지니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 문제 대두
- 위원회의 다양한 요구권 신설
 - 감사, 감찰, 징계요구권 부여
 -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 조치요구권
 - 제도 법령,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권
- 경찰대상 민원 및 불만 해결 기능
 - 경찰 직무집행 또는 제도·관행에 관한 고충민원 접수
 - 민원해결을 위해 관계공무원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경찰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
 - 민원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의 독립된 사무국을 설치해 기능 강화

■ 참조: 각국의 경찰위원회 제도 현황

국가	경찰체제	위상	구성	주요권한	비고
일본	국가 및 자치경찰 이원화	국가공안위원회 (합의제 관청)	위원장: 국무대신	국가경찰관리감독	내각총리대신 소할 하 설치*
		도도부현공안위원회 (합의제 관청)	민간인 3~5명으로 구성	도도부현 경찰관리감독	도도부현지사의 소할 하에 설치
미국	자치경찰제	주 또는 시경찰위원회 (합의제 관청)	통상 민간인 3~5명으로 구성	각 자치제경찰 관리감독	시장 또는 시의회로부터 독립
영국	자치제경찰을 기본으로 일부 지역 국가경찰 혼합	경찰위원회, 공인위원회, 병합경찰위원회 (합의제 관청)	통상 지방의원2/3, 치안판사 1/3	각 자치경찰 관리감독	각 자치제 의회에 설치
스웨덴	국가경찰제	국가경찰위원회 (합의제 관청)	위원장: 경찰장관	전국경찰 관리 운영	사법성 산하 설치
		지구경찰위원회 (자문기구)	민간인 6~8명으로 구성	관할지구 경찰주요사항 심의의결	관할지구 경찰본부에 설치
필리핀	국가경찰제	국가경찰위원회 (합의제 관청)	위원장: 내무자치성장관	전국경찰 관리 운영	내무자치성장관 소할 하 설치